

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960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2.
제출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가.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고
- 나. 2012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조정과 약사도서관 등 시설건립에 따라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원의 총수를 “557명”에서 “562명”으로 5명을 증원(안 제2조)
- 나. 집행기관의 정원 “541명”을 “546명”으로 5명을 증원(안 제2조)
- 다. 직급별 정원조정(안 제4조 별표3)
 - 일반직 : 476명 → 500명(증 24명)
 - 기능직 : 78명 → 59명(△19명)

3. 근거법규 : 따로 붙임

- 가.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
- 나.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예산 협의("12. 11. 14")
- 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11. 15 ~ 12. 4.(의견없음)

(제153회-본 회의 제3차부록)

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557”을 “56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541명”을 “546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초과현원에 대한 경과규정) 이 조례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 관 별 직 급 별		총 계	본 청	의 회 사무 국	직속기관	동
총 계		562		-		
정무직	소 계	1		-		
	구청장	1	1			
일반직	소계	500		-		
	3급	1	1			
	4급	5	3	1	1	
	5급	36	19	2	3	13
	6급이하	458		-		
별정직	소계	2		-		
	6급 상당 이하	2		-		
기 능 직		59		-		

(제153회-본회의 제3차부록)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제2조(정원의 총수) 울산광역시중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557명</u> 이며, 다음 각호와 같다.					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562명</u> -----					
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41명</u>						1. ----- <u>546명</u>					
2. (생략)						2. (현행과 같음)					
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	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
기 관 별 직 급 별		총계	본청	의회사무국	직속기관	기 관 별 직 급 별		총계	본청	의회사무국	직속기관
총 계		<u>557</u>		-		총 계		<u>562</u>		-	
정 무 직	소 계	1		-		정 무 직	소 계	1		-	
	구청장	1	1				구청장	1	1		
일 반 직	소계	<u>476</u>		-		일 반 직	소계	<u>500</u>		-	
	3급	1	1				3급	1	1		
	4급	5	3	1	1		4급	5	3	1	1
	5급	36	19	2	3		5급	36	19	2	3
	6급이 하	<u>434</u>		-			6급이 하	<u>458</u>		-	
	소계	2		-			소계	2		-	
별 정 직	6급 상당 이하	2		-		별 정 직	6급 상당 이하	2		-	
	기 능 직	<u>78</u>		-			기 능 직	<u>59</u>		-	

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	총계	본청	의회사무국	직속기관
총계		<u>557</u>		-	
정무직	소계	1		-	
	구청장	1	1		
일반직	소계	<u>476</u>		-	
	3급	1	1		
	4급	5	3	1	1
	5급	36	19	2	3
	6급이하	<u>434</u>		-	
별정직	소계	2		-	
	6급상당이하	2		-	
기능직		<u>78</u>		-	

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	총계	본청	의회사무국	직속기관
총 계		<u>562</u>	-		
정무직	소 계	1	-		
	구청장	1	1		
일반직	소계	<u>500</u>	-		
	3급	1	1		
	4급	5	3	1	1
	5급	36	19	2	3
	6급이하	<u>458</u>	-		
별정직	소계	2	-		
	6급상당이하	2	-		
기능직		<u>59</u>	-		

근 거 법 규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30조 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본청 ·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 · 도의 5급 이하(시 · 군 · 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7.3>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제2항제7호

제27조(신규임용)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(이하 "경력경쟁임용시험"이라 한다)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3호, 제4호, 제5호, 제7호,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.

(제153회-본 회의 제3차부록)

7.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,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)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

□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제1항제6의2호

제17조(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)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
- 6의2.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부칙 제4조(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)

제4조(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) 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·규칙 개정 후 경력경쟁임용 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·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④ 임용권자가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42조의2제4항 및 제42조의3에도 불구하고 시·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은 시·도인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과목 중 제1차 시험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.

- ⑥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- ⑦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에 따른 전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은 제한한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960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12. 12. 04(화) ·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2. 12. 06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2. 12. 12(수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최일식 기획예산실장)

- 가.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고
- 나. 2012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조정과 약사도서관 등 시설건립에 따라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정원의 총수를 “557명”에서 “562명”으로 5명을 증원(안 제2조)
- 나. 집행기관의 정원 “541명”을 “546명”으로 5명을 증원(안 제2조)
- 다. 직급별 정원조정(안 제4조 별표3)
 - 일반직 : 476명 → 500명(증 24명)
 - 기능직 : 78명 → 59명(△19명)

5. 관련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제2항제7호
- 나.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6. 참고사항

- 가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 없음

- 나. 예산조치 : 예산 협의("12. 11. 14)
- 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11. 15 ~ 12. 4.(의견없음)

7. 검토의견

- ▶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7호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고
- ▶ 2012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렬조정과 약사도서관 등 시설건립에 따른 정원 일부를 조정하는 것임
- ▶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557명에서 562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
- ▶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은 476명에서 500명으로 24명이 증가되고, 기능직은 78명에서 59명으로 19명이 감소되는 내용이며 의견으로서는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